

○專門委員 沈玩澤 釜山直轄市沙下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(參 照)

### 1. 제안이유

공유재산 매각시에 매각대금의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시켜 매각이 용이하도록 하고 매각대금, 대부료, 사용료 등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○제22조 공유재산 매각대금 5년 이내 분납 가능 사항의 추가규정은

— 81. 4. 30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300㎡ 이하를 건물바닥 면적의 2배로 하고

—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고발생 경우

—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역의 사유건물 점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

며  
○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하던 것을 연15% 연체요율로 하였고

○제23조2항에서는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/3수준으로 인하하였음.

### 3. 검토의견

UR 대비 농촌지역 대책으로 공유농경지 대부료의 대폭적 경감, 대부료,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부 지연시에 연체요율 연15%는 금융기관 일반 연체요율 연17%~19%보다 낮은 것으로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경감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에는 바람직한 제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비추어볼 때 장기 체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정확보에 약간의

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됨.

○專門委員 沈玩澤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(參 照)

### 1. 제안이유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— 구평동 마을회관 신축 취득

— 위 치 : 구평동 115-2번지의 2필지의 지상

— 구 조 : 철근콘크리트 슬라브, 지하 1층, 지상 3층 건물

— 총 면 적 : 238.8㎡(72.36평)

— 추정가격 : 121,000천원

### 3. 검토의견

상기 회관 건물은 80. 5. 8 현재의 마을회관 건물이 신축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현재의 건물을 멸실하고,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하여 노인정, 마을문고, 농수산물직판소,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 바 대지 3필지는 사유지, 국유지 및 공유지로 되어 있어 소유자의 승낙 등이 허락되면 번두리 지역인 구평동의 발전에 일익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○委員長 金信祐 예, 沈玩澤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.

다음은 質疑順序입니다.

먼저 沙下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